
1381 해외인증자료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신발류(footwear)는 미국 CPSC 규제 대상인가요?

(답변)

관련 CPSC 규제 적용여부

제품을 일반소비자용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소비자안전규제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판매/유통해야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해당 KOTRA 자료에서 언급한 CPSC의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PSC에서 안내하는 품목별 규제사항에서 귀사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사제품이 해당될 경우, 그 규격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라벨링을 해야합니다. 또한 제품이 관련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CPC(적합성인증서)를 작성하여 선적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연성 규제 (옷, 가정용 섬유제품 등)

16 CFR Part 1610: Standards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https://www.ecfr.gov/current/title-16/part-1610>

신발류 적용여부

16 CFR 1610.1 § 1610.1 Purpose, scope and applicability.

<https://www.ecfr.gov/current/title-16/section-1610.1>

(b) Scope, (c) Specific exceptions, (e) Applicability 항목에서 해당 규제에 적용되는 제품범위와 예외, 면제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c) Specific exceptions 특정예외” 항목을 보면 의류와 연결되거나 의류의 필수 구성성분이 아닌 경우라면 신발류(Footwear)는 예외품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귀사제품 용도와 상세스펙을 근거로 해당 규제에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Specific exceptions. This standard shall not apply to:

.
.

(3) Footwear, provided it does not consist of hosiery in whole or part and is not affixed to or does not form an integral part of another garment;

▶ 비금속 어린이제품 납 규제

총 납함유량 제한에 대한 시험방법

- 금속 어린이 제품 총 납함유량 제한에 대한 시험방법

Lead Content in Children's Metal Product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Determining Total Lead (Pb) in Metal Children's Products (including Children's Metal Jewelry), Revision November 15, 2012, Test Method CPSC-CH-E1001-08.3 (pdf).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CPSC-CH-E1001-08_3.pdf

- 비금속 어린이 제품 총 납함유량 제한에 대한 시험방법

Lead Content in Children's Non-Metal Product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Determining Total Lead (Pb) in Non-Metal Children's Products, Revision November 15, 2012, Test Method CPSC-CH-E1002-08.3 (pdf).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CPSC-CH-E1002-08_3.pdf

어린이 제품의 경우 해당 납규제가 적용되어 시험이 필요합니다.

- Total Lead Content (Lead Content Limit)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Lead/Total-Lead-Content/>

- Total Lead Content Business Guidance &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Lead/Total-Lead-Content-Business-Guidance-and-Small-Entity-Compliance-Guide#t1_01

▶ 프탈레이트 규제

16 C.F.R. § 1307.2에서 정한 아동용 장난감 또는 보육 용품(child care article)에서 인체에 닿는 부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농도가 0.1%(1000ppm)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 dibutyl phthalate (DBP)
- benzyl butyl phthalate (BBP)
- diisononyl phthalate (DINP)
- diisobutyl phthalate (DIBP)
- di-n-pentyl phthalate (DPENP)
- di-n-hexyl phthalate (DHEXP)
- dicyclohexyl phthalate (DCHP)

연방규정 16 C.F.R. part 1199는 프탈레이트 규정 내에서 부품이 인체에 접촉가능하다고 여겨지는 (considered accessible) 경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탈레이트 비즈니스 가이드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PSC > Phthalates Business Guidance &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Phthalate Content Limi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Phthalates-Information/>

프탈레이트 측정 시험규격

Test Method: CPSC-CH-C1001-09.4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Phthalates January 17, 2018

https://www.cpsc.gov/s3fs-public/CPSC-CH-C1001-09.4_Standard_Operating_Procedure_for_Determination_of_phthalates.pdf

신발류 적용여부

Phthalate FAQs

Does the prohibition on phthalates apply to children's shoes or socks?

Shoes and socks are not considered to be children's toys or child care articles. See the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s advisory opinion.

-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s advisory opinion.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318.pdf

* 출처 CPSC > Phthalates FAQs <https://www.cpsc.gov/FAQ/Phthalates>

▶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미국 내 유통되는 공산품의 경우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 CPSC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CPSC는 인증을 발행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사후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전규격을 지키지 않은 불량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및 리콜을 담당합니다.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은 다양하며 중첩될 수 있습니다. CPSC는 이러한 법을 근거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은 CPSC의 규제대상입니다. 제조자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규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하며 해당규격에 따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CPC(자기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규제 특성

: 자체 시험을 통한 규정만족 및 사후관리

CPSC에는 어린이제품을 제외하고 사전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소비자 제품 판매전에 반드시 강제 규제되는 요건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더라도 제조자/유통업자는 미국 시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규격 검토 후 해당규격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CPSC의 강제규제사항이 없을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임의인증 및 시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PSC는 시장 감시 및 부적합 신고 제도를 통해 이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일반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CPSC의 리콜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안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란?

2008년 미국 의회가 소비자 제품안전개선법(CPSIA)을 통과시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로 하여금 12세 이하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다양한 세부규칙(Rules)과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 및 제재 수단을 부여한 법률입니다. 즉,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실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CPSIA는 CPSC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근거법입니다.

▶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CPSC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CPSIA 안내페이지)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The-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은 안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CPSC에서 안내하는 품목별 규제사항에서 귀사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CPSC에서 인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한 뒤, 제품이 관련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CPC(적합성인증서)를 작성하여 선적 시 첨부하여

야 합니다.

특히 장난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 및 안전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사양과 용도에 따라 CPSIA 뿐만 아니라 FHSA 등 의 추가규제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유아/어린이 제품 관련 규제사항 및 규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주시오. 제품에 대한 세부 안전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예시: 납 등)가 필요합니다.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도, 소매업자에게 미국 내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사전에 검증한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를 부과(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조치 수반), 이를 검증키 위해 종전 자국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3자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해당 시험을 진행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미국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장난감은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장난감 안전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장난감 관련 강제 규격은 ASTM F963이며 안전규격은 ASTM F 963-17 및 ASTM F 963-07을 따릅니다.

이 법률에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및 의류, 운동기구, 책 등 모든 제품의 제조업체는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떼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조사명 및 수입업체 정보, 제조 일자 와 장소, 제조번호 (Batch Number) 등 생산자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동시에 부착해야 하고, 또한 어린이 용품에서의 납성분 규제와 화학성분 첨가제인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SIA는 거의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사항이 안전규제에 부합할 것
- ② CPSC 인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할 것
- ③ 제품의 안전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행(발행주체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 ④ 제품과 포장에 추적이 가능한 라벨을 붙일 것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제품별 CPSC의 규제, 강제규격 목록)(**관련 키워드 검색**)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 CPSC > Voluntary Standard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Voluntary-Standards>

- CPSC > Toys

<https://www.cpsc.gov/safety-education/safety-guides/toys>

- CPSC > Children's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childrens-products> (영)

<https://www.cpsc.gov/ko/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childrens-products> (한)

- CPSC > Toy Safety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

- CPSC > Business & Manufacturing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

- CPSC > Business Education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

- CPSC > Toy Safety Business Guidance &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Business-Guidance-and-Small-Entity-Compliance-Guide>

- CPSC > Total Lead Content Business Guidance &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Lead/Total-Lead-Content-Business-Guidance-and-Small-Entity-Compliance-Guide>

▶ Flammable Fabrics Act (FFA)

일부 섬유제품은 CPSC의 가연성섬유규제(Flammable Fabrics Act (FFA))가 적용됩니다.

Flammable Fabrics Act (FFA)의 하위규정인 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은 제품별로 가연성 규격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연성 규격에 귀사제품이 해당될 경우 그 규격에 따라 시험 후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라벨링을 해야합니다.

CPSC의 가연성 규격 중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PART 1610)” 관련규격이 있으나 Footwear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귀사의 제품이 CPSC에서 정의하는 Clothing이나 Textiles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제품이 해당규격에 적용되는지는 규격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서 직접 판단해야합니다. 제품의 용도/사양에 따라 규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으므로 업체가 직접 제품 사양을 근거로 판단하거나 CPSC 측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참고 CPSC > Clothing Business Guidanc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Clothing>

관련법

- CPSC > Flammable Fabrics Act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Flammable-Fabrics-Act>

- Flammable Fabrics Act 법안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fa.pdf

하위 연방규정

- Flammable Fabrics Act 관련 연방규정

Title 16 CFR SUBCHAPTER D-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S §1610

(parts1602 ~ 1633은 제품별 가연성 규격)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4e1b57acf0fd4ac8dc13f4cbcad718f&mc=true&tpl=/ecfrbrowse/Title16/16CIIsubchapD.tpl>

- **CLOTHING TEXTILES**의 가연성(Flammability)에 대한 규격 (요구사항, 시험, 라벨링 등)

16 CFR Part 1610 (1610.1 to 1610.61)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10a72b29540de2877b83eabfec56b70&mc=true&node=pt16.2.1610&rgn=div5>

규제내용

- CPSC의 가연성 규제 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s

소비자용 완제품인 옷(Apparel)이나 가정용 섬유제품(Household Textiles) 경우 CPSC의 규제 'Flammable Fabrics Act'에 따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CPSC는 Flammable Fabrics Act에 의거하여 섬유제품에 대해 재질별로 가연성 시험을 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제품도 해당규제가 적용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Flammable Fabrics Act 관련규정에서 명

시하는 가연성 규격 중 “CLOTHING TEXTILES” 관련규격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어린이용 제품 안전 규제

또한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관련규격을 준수하고 업체가 직접 CPC를 발행해야 합니다. CPSC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모든 제품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제품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어린이 제품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CPC 인증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서(guaranty) 발행 (선택사항)**

- CPSC > Continuing Guarantie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Flammable-Fabrics-Act/Frequently-Asked-Questions-for-Continuing-Guaranties-under-the-Flammable-Fabrics-Act-and-Filed-with-the-Commission/>

- CPSC > Form and Instructions for Filing a Continuing Guaranty under the Flammable Fabrics Act (FFA에 따른 Continuing Guaranty 제출용 양식 및 안내사항)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lamm.pdf

▶ **GCC 인증서 : CPSC 일반 성인용 제품 인증 (일부 일반제품)**

어린이용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미국)제조사 및 수입업자는 일부제품의 경우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안전규제에 따라 적절한 시험 후 자기 적합성 선언(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를 작성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CPSC >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 GCC 개요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

- CPSC > Sample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 GCC 작성 예시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GCC>

- CPSC > Rules Requiring a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 General

Use/Non-Children's Products : GCC를 작성해야 하는 일반제품 리스트(The list of non-children's (general use) products requiring a certificate) (**16 CFR Part 1610 Wearing Apparel 해당**)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a-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

▶ **CPC 인증서 : CPSC 어린이용 제품 인증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장난감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는 반드시 CPSC 지정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CPC(아동제품인증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해야 합니다. CPC는 CPSC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근거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인증서 상에 제품이 장난감 안전규정에 만족함을 명시해야 하며, CPC 및 성적서는 모두 영문이어야 합니다. CPC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statement)는 아래 예시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

- CPSC > Rules Requiring Third-Party Testing and a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제3시험소 시험과 CPC인증서를 요구하는 규정)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Third-Party-Testing>

CPC 작성 유의사항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업체는 제품에 ASTM F 963이 적용될 경우 ASTM F 963에 따른 CPC작성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어떤 섹션에 대해 적합성선언을 하는 지 특성세션을 명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발육기의 경우 완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섹션과 함께 '4.22 Teethers & Teething Toys'로 '섹션 4.22'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CPSC > ASTM F 963-17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ASTM-F-963-Chart>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 ; CPC 인증서 예시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CPC/>

아래 표 'Group 1: Sections Applicable to Most Toys'에서 ASTM F963-11 시험항목 중 모든 장난감에 적용되는 사항이 정리되어있으니 해당 항목(제3자 시험소 시험이 필요한 항목만)에 대한 시험 후 CPC에 섹션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Group 1: Sections Applicable to Most Toys
As mentioned abov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most toys. All toy manufacturers should review these sections to ensure that their products are in compliance.

| Section | Title | Requires Testing at a CPSC-Accepted Laboratory |
|--------------------|---|--|
| | | Small Batch Manufacturers Testing Requirements |
| 4.3.5.1 | Heavy Elements: Paint and Similar Surface Coating Materials | Yes |
| 4.3.5.2 | Heavy Elements: Substrate Materials (Note: Many toys intended for children under 6 and all toys intended to be mouthed or contact food and drink are subject to this requirement. See the standard for more.) | Yes |
| 4.3.6.3 | Cleanliness of Liquids, Pastes, Putties, Gels, and Powders (Except for cosmetics and tests on formulations used to prevent microbial degradation.) | Yes |
| 4.6 | Small Objects (Except no third party testing is required for labeling and/or instructional literature requirements) | Yes |
| 4.7 | Accessible Edges (Except no third party testing is required for labeling and/or instructional literature requirements) | |
| 4.9 | Accessible Points (Except no third party testing is required for labeling and/or instructional literature requirements) | |
| 5 (Entire Section) | Safety Labeling Requirements | No |
| 6 (Entire Section) | Instructional Literature | No |
| 7 (Entire Section) | Producer's Markings | No |

* 출처: ASTM F 963-17 Requirements > Group 1: Sections Applicable to Most Toy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ASTM-F-963-Chart>

CPSC의 어린이 제품 규제 및 규격 'ASTM F963'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 제품사양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적용.

미국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하는 완구(장난감)를 수출할 때에는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 개선법)에 따라 제품이 반드시 미국의 장난감 안전 규격 ASTM F963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난감에 대한 강제 요구사항은 대부분 해당규격을 따릅니다. 또한 그 외에 품목별로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등 다른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CPSC > ASTM F 963-17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ASTM-F-963-Chart>

이외에 장난감 및 유아용품에 적용되는 상세 규제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와 함께 하단에 “참고] * CPSC 어린이 제품 규제 및 규격 ; 상세사항”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 CPSC 지정 시험소 검색

CPSC에서 요구하는 인증 및 라벨링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정 인증이 아니라 관련시험 수행 후 업체가 직접 발행하는 자기적합성선언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이 아닌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 성적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은 시험기관과 귀사 제품사양별로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당시험기관에 직접 확인 바랍니다. **(제품별 시험가능여부 상이)**

아래 페이지의 Country/Region 항목에서 South Korea 선택하면 한국 소재 CPSC인정 시험소가 검색됩니다. 해당 시험소를 클릭하면 시험소별 시험 가능한 시험규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PSC > List of 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 CPSC 인정 시험기관 목록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국가/시험 항목별로 검색 가능)

시험기관 (제 3자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현재 CPSC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어 검색 메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CPSC 지정 시험기관으로는 KCL, KOTITI, SGS, Intertek 등이 있으니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십시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http://www.kcl.re.kr/> 02-2102-2500/ 김영준 연구원 02-2102-2565
- KOTITI 시험연구원 <http://kotiti.re.kr> / 02-3451-7000
- 한국에스지에스(SGS) www.kr.sgs.com / 02-709-4500
- 인터텍 www.intertek.co.kr / 02-774-8201

국내의 대표적 완구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미국 완구의 안전검사 항목인 ASTM F 963 및 프탈레이트에 대해 미국 CPS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시험기관으로 미국으로 완구 수출 시 CPC 인증에 필요한 제3자 시험이 가능합니다.

-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http://www.kcl.re.kr>, 02-2102-2500

- 담당자: 김영준 선임연구원

- 연락처: 02-2102-2565

- KCL의 미국 CPSC 등록 확인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ViewDetail.aspx?Reqld=ruqN8vYsh0LcGD6KjUE2bQ%3d%3d&LabId=tIUMweGYnzXQFp6KedWj%2fw%3d%3d>

▶ 라벨링 포장 규정

트래킹라벨 (Tracking Label) 규제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 CPSC > Tracking Label Requirement for Children's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racking-label>

- CPSC > Tracking Label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ulemaking/Final-and-Proposed-Rules/Tracking-Labels>

※ 참고자료

- http://www.kofoti.or.kr/bbs/data/1304_data3_02.pdf 한국섬유산업연합회-CPSIA규제동향

- <http://user.kotiti.re.kr/technic/Vol11No211.pdf> KOTITI시험연구원-CPSC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 CPSC > Regulations Laws & Standards > Statutes

<https://www.cpsc.gov/th/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the-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FHSA-Requirements/>

- CPSC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

※ CPSC 어린이 제품 규제 및 규격 ; 상세사항

▶ 어린이 제품 상세 규제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에 따른 유아용 제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 Lead in Paint (Surface Coating Limit)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Lead/Lead-in-Paint/>

• Total Lead Content (Lead Content Limit)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Lead/Total-Lead-Content/>

• Phthalates Business Guidance &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Phthalate Content Limi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Phthalates-Information/>

• FAQs - Certification and Third Party Testing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Third-Party-Testing/FAQs-Certification-and-Third-Party-Testing/>

• Product and Outer Package Labeling Requirements for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Product-and-Outer-Package-Labeling-Requirements-for-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

어린이제품에는 일반적으로 ASTM 규격이 적용가능하며 CPSC의 뽀족하거나 날카로운 제품, 작은 부품, 페인트에 사용되는 납 함유량 관련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가연성에 대한 강제 요구사항(가연성시험)은 없지만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에 따라 가연성이 높은 물질을 포함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귀사제품사양을 근거해 위험물질이 함유되어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연성시험의 여부는 업체가 많은 유사시험을 통해 가연성이 낮은 안전한 물질임이 잘 알려진 물질의 경우(예: 폴리에스테르) 기존 지식을 기준(basis)으로 하거나, 예상 가능하고 의도된 사용 중의 위험성을 기준(basis)으로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기 원할 경우 Annex A5 of ASTM F963-17 또는 16 C.F.R. § 1500.44 에 명시된 시험방법대로 시험을 받으시면 됩니다.

* 16 C.F.R. § 1500.44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6/1500.44>

* 출처 CPSC > Toy Safety (Are toys required to be tested to meet flammability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

* 참고 CPSC >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FHSA-Requirements/>

입이나 신체에 접촉(accessible)하는 제품일 경우 4.3.5.2(1) of ASTM F963-17에 따라 총 납함유량 및 용해성이 있는 8대 중금속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만 합니다. 입에 접촉하지 않는 제품이라도 접촉가능한

제품은 CPSIA에 따라 반드시 총 납 함유 한계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 완구나 부품은 ASTM F963-17의 4.3.5.2(1) 표1과 Section 4.3.5.2(2)(c)에 명시된 카드뮴한계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 CPSC > Toy Safety (Must all accessible substrates be tested for total lead and soluble heavy elements as specified in ASTM F963-17?)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

참고로 아래는 작은 부품(small parts)에 대한 ASTM F963-17 규격을 위반하여 리콜 된 사례입니다.

참고링크에서 작은 부품이 숨 막힘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CPSC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은 부품에 대한 규제 안내페이지는 두 번째 참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Infantino Recalls Teething Toys Due to Choking Hazard; Sold Exclusively at Target

<https://www.cpsc.gov/Recalls/2014/infantino-recalls-teething-toys>

- CPSC > Small Parts for Toys and Children's Products Business Guidanc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Small-Parts-for-Toys-and-Childrens-Products>

※ 이처럼 어린이용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CPSC 규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CPSC BUSINESS DESKTOP REFERENCE GUIDE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QuickResourceGuide.pdf

▶ 유아용 제품(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규제

CPSC는 어린이보다 더 어린 유아용 제품(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에 대해 추가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제품(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은 추가적인 제품 마킹(markings)이 필요하며 Product registration card가 제품에 부착/동봉되어야 합니다.**

- CPSC >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

- Consumer Registration Cards for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Durable-Infant-or-Toddler-Product-Consumer-Registration-Cards>

▶ CPSC의 Recall List (리콜 사례)

CPSC에서 리콜을 명령한 사례를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CPSC는 유아/어린이용 제품 전반에 대해 위험이 보고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규제하고 있습니다.

- CPSC > Recall List

https://www.cpsc.gov/Recalls?combine=card&field_rc_date%5Bdate%5D=&field_rc_date_1%5Bdate%5D=

참 고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아마존)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사후 엄격한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 의 처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귀금속 규격시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6090-9551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컨설팅 기관

국내에 규격시험이 가능한 기관이 없으나 해외기관/시험소와 직접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콜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info/concList.do?key=9093>

지원 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89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main.do>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일반트랙 3차) 1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54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이미 공고된('24. 2. 29.) 패스트트랙인증* 지원은 당시 공고기준을 따름

| 구분 | 내용 |
|-------|--|
| 패스트트랙 |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패스트트랙 인증(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
| 일반트랙 |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유럽 CE(의료기기 등 패스트트랙 이외에), 중국 NMPA, 미국 FDA 등 |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모집 기간

| 구분 | 기간 |
|-------|--|
| 패스트트랙 | 24년 2월 29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까지(상시 모집) *패스트트랙은 상시 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 심사료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
| 일반트랙 | '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 까지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 |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남] 2024년 체코·헝가리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6648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제주]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6653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2024년 제5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안내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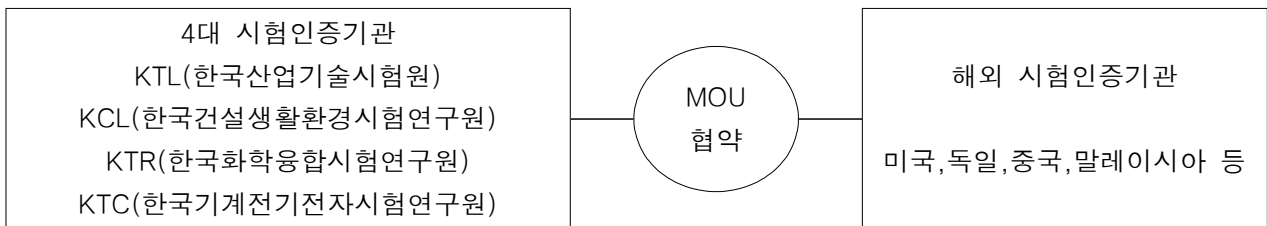
1. 접수 기간 : 2024. 6. 24(월) ~ 2024. 7. 5(금)

*세부일정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2.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24년 12월까지 납품예정인 수출기업'(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4. 지원 범위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물,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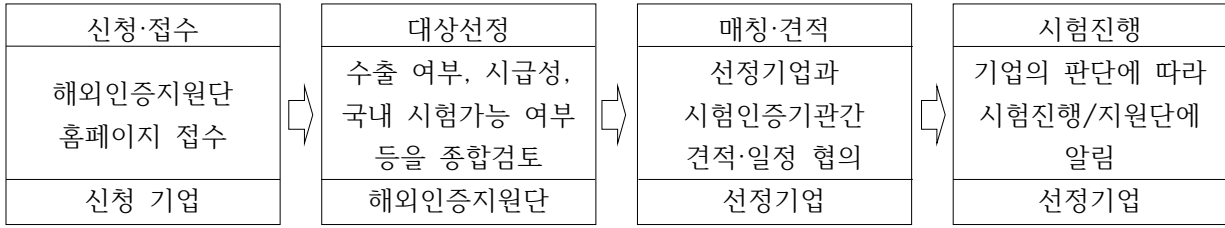


5. 지원내용

- 일반 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6.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신청방법 :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globalcerti.kr/>) -> 공지·안내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선정 > 매칭·견적 > 시험진행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단, 1개 인증 취득시 다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만 지원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복수 선택 불가)
- 시험 진행 중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시험비용 추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이라도 시험 완료 일정은 기업의 제품 부적합 및 자료 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이전 4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 신청·접수 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시 매칭 지원 취소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 실제 계약 및 시험 신청 진행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시오.

: <https://www.globalcerti.kr/admin/noticeMngDetail?seqNo=275>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